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54 호

2007년 5월 18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06호(불법주정차 단속인력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46호(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공고) 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47호(공사(소액수의) 전자입찰 공고
(장수동 793-10번지 주차장 조성 공사)) 1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48호(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논현동 562-2번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공람(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 1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553호(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연결,
운연지구 순환도로) 결정(변경) 입안 공람 공고) 21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20호(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아파트 11단지)) 25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21호(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한화꿈에그린월드 에코메트로아파트 12단지)) 27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506 호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최종합격자 명단

모집분야	합격인원	응시번호	성 명
비전임계약직	1명	1	김 애 선
교통서포터즈	2명	1	임 명 희
		4	이 은 영

□ 최종합격자 등록

- 기 간 : 2007. 5. 14(화) 09:00 ~ 18:00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과 (주차단속팀)
- 대 상 : 최종합격자 전원
- 제출서류(공통)
 - 교통서포터즈 : 이력서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
 -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민간인신원진술서3통(반명함판사진첨부), 이력서1통, 채용신체검사서1통, 신원진술서1통(경찰서 홈페이지 서식)
- 주의사항
 - 등록기간내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격이 상실
 - 합격자 등록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546 호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합니다.

2007. 5 .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예고기간 : 2007. 5. 18 ~ 5. 27(10일)
2. 예고내용 :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안)』
“별첨내역 참조 ”
3. 예고방법 : 구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등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07. 5. 18 ~ 5. 27(18:00까지)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제출(FAX 또는 우편접수 가능)
다. 의견접수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
 - 1) 전화번호 : 032-453-2830 (FAX 032-453-2839)
 - 2) 주 소 : 우)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
남동구청 도시정비과(광고물관리팀)

※ 우편으로 접수시 의견제출기간 최종일(2007.5.27) 오후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서류가 접수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등특정구역지정및표시제한·완화고시안

제1조(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제한·완화 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있는 광고 문화 조성 및 시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지 구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상업용지)
논현2택지개발지구	논현·고잔동 일원	2,545,174	140,209
소래·논현도시개발구역	고잔동 591번지일원	2,383,283	42,412

제3조(일반적인 표시제한·완화 사항) ① 광고물 등의 문자 및 숫자(이하 “문자 등”이라 한다)

1. 광고물 등의 문자는 한글, 한자, 특수문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업종 및 취급 상품을 알 수 있는 외국문자 사용시 한글을 병행해야 한다.
2.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 표시내용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문자의 디자인 수준을 높여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저속한 내용 또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② 광고물 등의 도안

1. 도시경관의 향상 및 광고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상징도안, 상징이미지, 픽토그램 또는 여백 등(이하 “도안 등”이라 한다)을 광고물에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도안 등에는 상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도안, 이미지, 그림, 업소주 인물사진 등을 포함하며, 당해 건물이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안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3. 도안 등은 통일·균형·균제·변화·반복·대칭·조화의 미 등을 고려하여 아름답게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이용하거나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권장한다.

③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 등

1. 가로형 광고물 등에 있어서 플렉스 등의 유연성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2. 광고물 등은 설치·변경 또는 제거가 용이한 광고물 등을 권장하며, 제거시 설치 흔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권장한다.
3. 연립형 광고물은 업소의 증가를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 고유 전통의 아름다움을 이용하거나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권장한다.

④ 광고물 등의 색채

1. 광고물 등의 색채는 당해 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극적이지 않은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입체형 문자 또는 도안 이외의 표시는 원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3. 광고물 등은 파스텔톤의 색채, 광고물 등의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 조명에 의한 색채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광고물 등의 표시장소 · 위치

1. 법, 기타 관련 법령등 이 고시의 규정에 특별히 허용 규정이 없는 한 도로경계 및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2. 전면유리(Curtain Wall)인 건축물에는 광고물의 게시시설을 별도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광고물 등의 설치 수량 : “~업소당 광고물 수량 제한제 및 면적총량제 병행”

1.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총 수량은 업소별 2개소 이하로 하며, 지역별 · 업소면적 등에 따라 업소당 표시가능한 총면적을 제한 하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건물 4면중 2면이 도로에 직접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3개소 이하로 한다.
2. 1호의 기준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 규정 및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상 수량제한 사항, 영 제15조제1호 규정에 의한 건물정면 4층 이상의 가로형 간판의 표시제한 사항, 영제15조제4호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의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층수 제한 사항 및 영 제17조제3호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의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제한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문이용, 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광고물 수량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일반적 표시사항

1.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상호등(상호,상표,성명,주소,전화번호,영업내용 등)의 표시면적은 광고물 표시면적의 60%를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표시면적의 합계가 3㎡이하인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백화점등 유통산업발전법 및 복합상영관(극장)등 영화진흥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등록을 한 건물에는 남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에 현수막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2개이하로 한다.
3. 건물외벽에 광고물부착시 표시위치는 건물전체 입주자와 공유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업소와 병행하여 표시해야 한다.

⑧ 기타사항

1. 구청장은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수량감소, 면적감소,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2.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영, 조례에 의한다.

제4조(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① 가로 간판의 표시방법

1.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에 1개의 간판만 허용한다. 단, 건물 4면중 2면 이상이 도로에 직접 접한 업소는 2개 설치 가능하다.
2.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4층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며 1층에는 판류, 입체형 또는 복합형(세로폭 50cm이내의 게시시설에 입체형으로 표시)으로 하여야 하며, 2층 이상은 복합형 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고, 측면 및 후면을 포함한다.
3. 건물의 최상단에는 전면에 건물명(회사명 포함) · 건물을 상징하는 입체형 문자 또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4. 한 건물내 같은 층에 표시되는 가로형 간판은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폭의 80%범위내로 하되, 이웃한 광고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고, 가로폭은 점포점유 폭 이내로 설치하되 별표1의 표시면적 범위내에서 설치한다. 단, 층간 벽면 높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엔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할 수 있다.

②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세로형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 상업지역의 건물정면의 주출입구(주계단 입구) 기둥 양측 1곳에 한하여 1㎡범위내에서 건물명(건물상징 도형)이나 비영리 단체의 명칭에 한하여 비조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1.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업소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간판의 위치는 건물2층 창문 상단선 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상단은 벽면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3. 업소당 표시면적은 1면의 면적이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의 경우에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4.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연립형 또는 일직선상에 표시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4층 이상 건물에 광고물을 표시 · 설치하는 경우,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각 표시물의 규격(돌출폭·두께·가로폭)을 통일시켜야 한다.
5. 건물의 양쪽 끝부분에만 설치해야 한다. 단, 건물 2면 이상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 모서리 부분중 2개소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경우 한쪽 끝에만 표시한다.

④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 상업지역중 복합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게시시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1.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에 한하며,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5층 미만 건물은 표시를 금지한다.
 - 나. 5층 이상 자사건물에 한하여 당해 건물명(회사명), 그 회사의 광고내용을 전광류, 네온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단, 건물주는 반드시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2. 상업지역외 지역은 건물 전체가 1인 소유자로 연면적 1/2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약국인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1. 건축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의 부지외의 지역 또는 장소에 표시를 금지한다.
3.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위치에 한하며,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1개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1개의 지주를 이용한 종합간판(종합사인보드)만 허용하되 설치시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⑦ 현수막의 표시방법

1. 현수막의 설치를 금지한다. 단,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목격자 또는 미아를 찾는 내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2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⑧ 애드벌룬, 벽보, 전단의 표시방법

애드벌룬, 벽보, 전단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벽보는 지정벽보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 당해 공공시설물의 관리청(또는 관리자)이 따로 표시를 허용하는 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⑩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1. 창문이용광고의 세로높이는 4층이하 20cm, 5층~6층 30cm, 7층이상은 40cm 이내이며 가로크기는 하나의 창문틀 1/2이내에서 표시해야 한다. 단, 가로 크기는 3m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전기를 이용하여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2. 1층 창문이용 광고는 창문 하단부에서 1.3m 상단에, 2층 이상은 창문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글씨는 백색의 시트지만 가능하며, 글짜바탕 및 시야, 햇빛차단 목적등으로 썬팅시트지를 설치할 경우 이를 무채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⑪ 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1.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한하여 허용하며 주거 · 준주거 지역에는 표시를 금지한다. 단, 의료기관 · 약국은 표시할 수 있다.
2. 상업지역의 네온 · 전광류 표시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표시면적의 합계가 3㎡이하(전광류0.5㎡이하)인 경우(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제외)와 입체형 문자 · 도형에 LED를 삽입하여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아니하는 간접조명 형태의 광고물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광류의 공공목적에 위한 광고내용 표출의 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숙박시설은 네온표시가 가능하나 전광류 사용은 금지한다.

⑫ 교통수단이용광고의 표시방법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⑬ 선전탑 및 아취광고, 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취광고, 공공시설이용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 상업지역에서는 표시가 가능하다.

제5조(국가 등의 광고물 등 제한)

-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영 제37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광고물심의 등)

- ① 법, 영, 조례,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시 제출서류는 영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입주업소 순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계획적인 광고물등의 표시를 유도하여, 도시경관의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위하여 건물주 또는 업소주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통해 광고물 표시제한·완화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는 경우 자율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그 대상, 종류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를 시행하기 전에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 되었거나 신규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의 광고물 등은 당해 표시기간까지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고시에 의한다.
- ③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법, 영, 조례에 의한다.

[별표 1]

업소당 가로형광고물 면적

지역구분	층별	업소당 가로형광고물 총면적(㎡)					
		업소면적 30㎡미만	업소면적 30㎡이상 60㎡미만	업소면적 60㎡이상 100㎡미만	업소면적 100㎡이상 200㎡미만	업소면적 200㎡이상 400㎡미만	업소면적 400㎡이상
상업외 지역	1층	4(6)	5(7)	6(8)	8(10)	10(12)	12(14)
	2층-5층	5(7)	6(8)	8(10)	10(12)	12(14)	14(17)
상업지역	1층	4(6)	6(8)	8(10)	10(12)	12(14)	15(18)
	2층-5층	6(8)	8(10)	10(12)	12(14)	15(17)	17(20)
자율규정에 의한 경우		심의를 통한 별도 면적조정 적용					

※ ()는 건물 4면중 2면 이상이 도로에 직접 접한업소의 광고물 표시면적

※ 1개의 업소가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표를 적용하고, 1개의 업소가 여러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별 면적 중 큰 면적에 작은 면적(면적이 같은 경우를 포함)의 50%를 가산한 면적을 총면적으로 한다. 다만, 업소면적 400㎡이상의 경우로써 총면적의 가산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시 인정하는 범위내로 한다.

- ① 업소면적 : 업소별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집합건축물대장의 경우 전유부분의 면적, 일반건축물대장의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또는 (임대)계약서상의 면적(전유부분 해당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업소당 가로형광고물의 총면적(㎡) : 별표1 내용에 의거 면적을 제한받으며 총면적을 가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
- ③ 건물명, 건물상징 도형 : 건물주가 건물명 또는 건물을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세로형, 건물상단)의 총면적은 8㎡ 이내로 한다.
- ④ 광고물등의 면적
 1. 건축물의 외장재가 건축물의 허가(신고를 포함)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광고물의 게시시설 목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외장재가 건축물의 허가(신고를 포함)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외장을 위하여 건축물의 완공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문자, 도형등

의 면적이 건물외장재 면적의 10%이내인 경우와 건물주가 자기의 건물에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광고물의 표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괄하여 계획적으로 외장재(게시시설의 형태를 포함)를 설치한 경우에 외장재 면적은 광고물등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광고물등의 면적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의할 수 있다.

⑤ 업소면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기 표시되어 있는 광고물등의 면적이 위의 규정이내인 경우 : 위의 면적까지 표시가능
2. 기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 위의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 법령상의 표시기간 동안 표시를 허용하되 표시기간이 지난 경우 초과면적 부분 제거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한 기간연장,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 미관상 · 주변 여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립형광고물에 대한 특례

연립형광고물의 경우로서 미 입주업소를 위해 게시시설에 광고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소 입주시까지 건물명 또는 건물을 상징하는 도안등을 건물주가 표시할 수 있으며, 미 입주업소 입주후 당해 부분에 업소주가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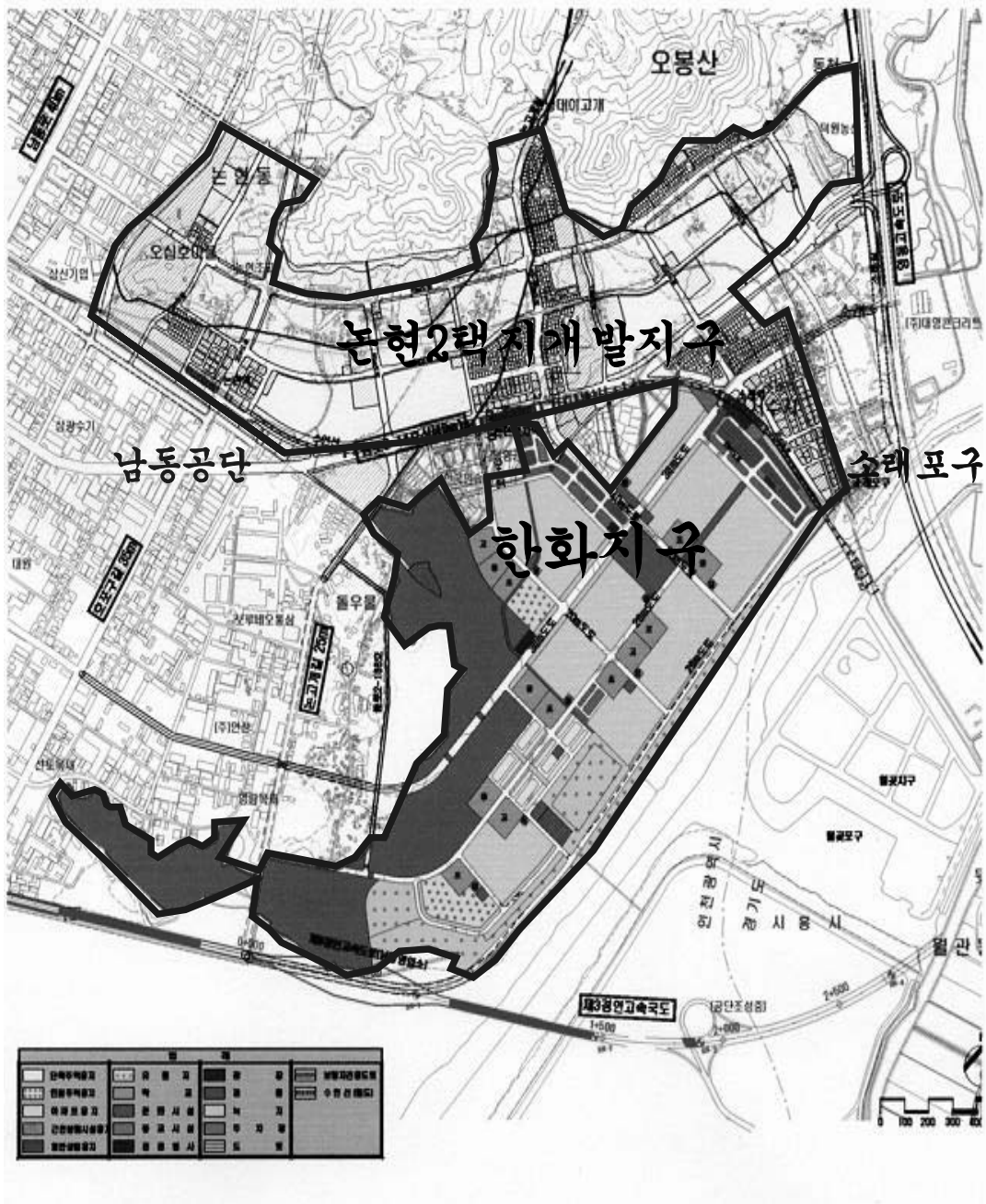
⑦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의 완화

1. 백화점, 건본주택, 대형상가, 문화시설 기타 건축물로서 당해 광고물등의 설치가 도시미관상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기념비적이거나 Landmark의 성격을 띠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2. 업소당 가로형간판의 면적 제한으로 인하여 몹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이용하거나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⑧ 허용오차

업소당 옥외광고물등의 면적제한의 허용오차(옥외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시)는 5% 이내로 한다.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547 호

공사(소액수익)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장수동 793-10번지 주차장 조성 공사

나. 공사개요 : 잔디블럭포장 - 3.41a, 점토벽동포장 0.2a

보차경계석172M, 포장경계석 17M, 하수관(φ 300mm,흡관) 6M

U형측구 73M 스트로브잣나무 외 5종 51주, 백철쭉외 1종 850주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입니다.

라. 기초금액 : 59,257,000원(추정가격 53,870,000원, 부가세 5,387,000원)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 5. 17(목) 13:00 ~ 5. 23(수) 13:00

바.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07. 5. 23(수) 14:00 입찰집행관 pc

사. 현장설명 : 등록기간중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설계서 및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전까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032-453-2983)에게 열람 및 문의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 까지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 자 이어야 하며 (강화,옹진군)에 소재업체는 제외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30호)의 iv.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같습니다.

5.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나.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주의사항

낙찰자는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행정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기타사항

-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 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기술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등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 (www.g2b.go.kr)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개찰결과조회) 및 우리구 홈페이지(www.namgu.incheon.kr)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032-453-29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5. .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548 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논현동 562-2번지)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63) 및 교통과(☎453-290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당해 사업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05.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62-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교통시설(주차장)

【명 칭】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 1,234.3㎡(주차대수 45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소래길 88

5. 사업의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7. 6. ~ 200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8.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

9.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용 지 조 서

공사명: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순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잔여 면적 (m2)	소 유 자		관 계 인		권 리 내 용	비 고
					계	계획내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논현동	562-2	대	1,234.3	1,234.3	1,234.3		대한주택 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553 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연결, 운연지구 순환도로) 결정(변경) 입안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열람 하오니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있는 경우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723), 남동구청 건설과(453-28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7. 5. 1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 교통시설(도로)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소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	9	국지 도로	521	광3-10	소3-5 (구월동736-1)	일반 도로			전재울 지 구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433	소3-2 (구월동771-2)	소3-2 (구월동765-6)	일반 도로		2006. 6. 5	
변경	소로	3	3	6	국지 도로	175	소3-2 (구월동771-2)	소2-1	일반 도로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205	소2-1	소3-2 (구월동765-6)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1	9	국지 도로	330	대1-20 (수산동 25)	경신지구 소3-1	일반 도로			경신 지구
기정	소로	1	28	10	국지 도로	277	광3-7	구월4동 643-3	일반 도로			구월 지구
변경	소로	1	28	10~17	국지 도로	330	광3-7	경신지구 소3-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2	9	국지 도로	350	대1-13	능골지구 소3-5	일반 도로			능골 지구

▶ 변경 사유서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사유
도 로	· 도로신설 3개소 · 도로 노선연장 및 시종점변경 3개소	·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도로신설, 선형변경, 노선연장

나. 운연지구 순환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영 태	주 요 경과지	최 조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2	10	국지 도로	953	중로3-69호선 (운연동323-1)	중로3-69호선 (운연동256)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3	10	국지 도로	215	중로3-69호선	소로1-1호선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130	소로2-1호선	소로3-3호선	일반 도로		2000.10.14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125	소로1-2호선 (운연동267-1)	소로1-2호선 (운연동259-10)	일반 도로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293	중로3-69호선	소로3-3호선	일반 도로		2000.10.14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215	중로3-69호선	소로1-1호선	일반 도로		2000.10.14	
폐지	소로	3	3	6	국지 도로	509	중로3-69호선	소로2-1호선	일반 도로		2000.10.14	

▶ 변경 사유서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사유
도 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확폭 (L=1,293m, B=6~10m)	·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도로 확폭 및 도로계획선 선형변경

2.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사), 남동구홈페이지 게재, 구보 게재,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3.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64)

5. 첨부 : 도면게재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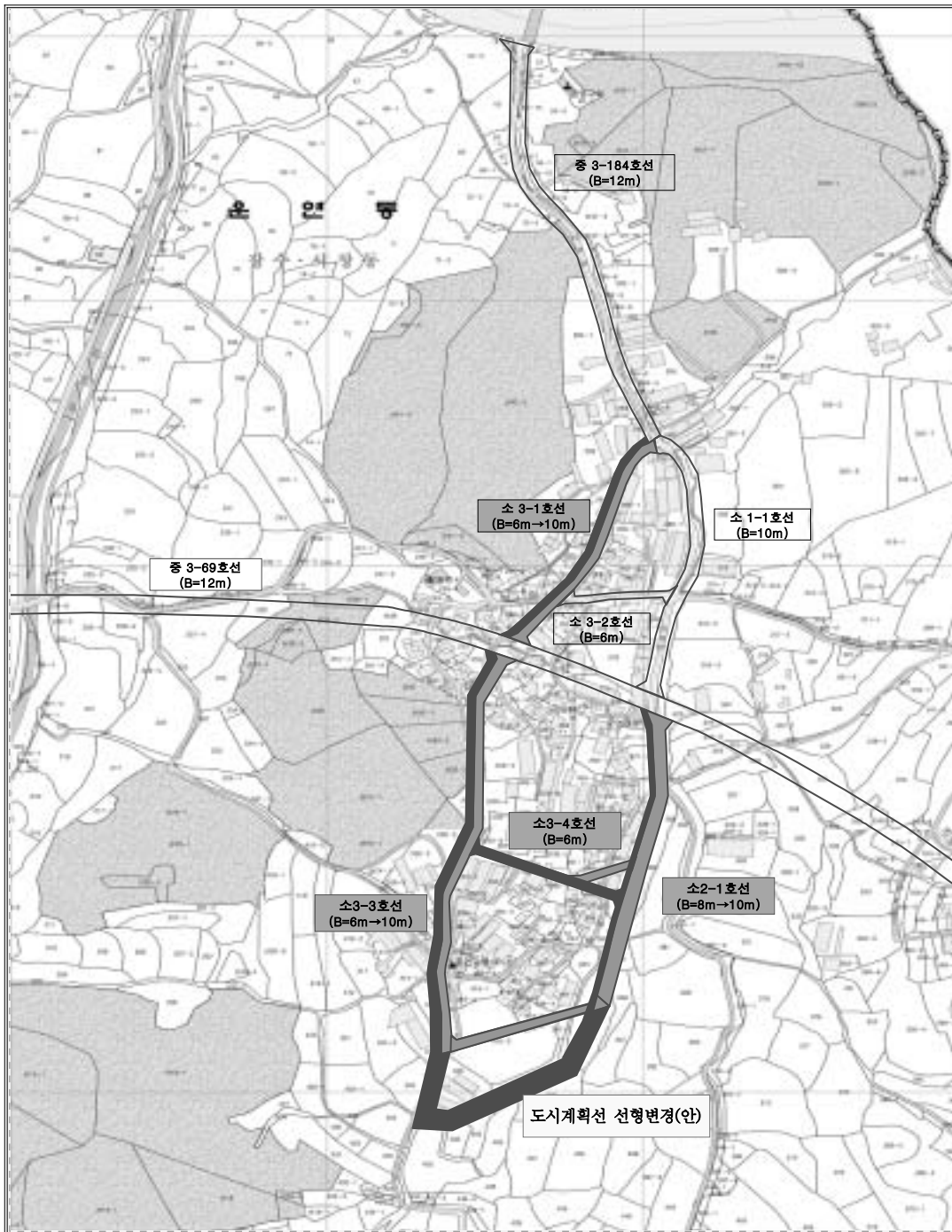
위 치 도

(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 연결도로)



위 치 도

(운연지구 순환도로)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20 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 1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5.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한화 꿈에그린 월드 에코메트로아파트 11단지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주)한화 (대표자 : 남영선)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 성명 : (주)화인파트너스 (대표자 : 이동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번지 서린빌딩
- 성명 : (주)한화건설 (대표자 : 김현중)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모비딕빌딩 8층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11블럭
- 연 면 적 : 287,953.65㎡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31층, 20개동, 1,622세대
- 사 업 비 : 580,073,938천원

○ 변경내역

- 기초형식 : 독립기초 $\Rightarrow$ 매트기초
- 파일변경 : $\varnothing 400,500(12,260\text{본}) \Rightarrow \varnothing 500(10,174\text{본})$
- 1102동과 1110동 사이 간격 이격 : $61.87\text{m} \Rightarrow 63.28\text{m}$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6. 10. 18 ~ 2009. 7. 30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07 - 21 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 1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5.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한화 꿈에그린 월드 에코메트로아파트 12단지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주)한화 (대표자 : 남영선)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 성명 : (주)화인파트너스 (대표자 : 이동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88번지 서린빌딩
- 성명 : (주)한화건설 (대표자 : 김현중)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모비딕빌딩 8층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12블럭
- 연 면 적 : 229,195.623㎡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31층, 16개동, 1,298세대
- 사 업 비 : 472,259,142천원
- 변경내역
 - 기초형식 : 독립기초 ⇒ 매트기초

- 파일변경 : Ø400,500(10,053본) ⇒ Ø500(8,560본)
- 위치이동 : 1203동 0.557m 이동, 1208동 2m 이동, 1210동 1.687m 이동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6. 10. 18 ~ 2009. 7. 30

5.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